

정 관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여성디자이너협회 (이하 "본 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 Woman Designer Association이라 표기하고 약칭으로 KWDA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역량 있는 신진 여성디자이너를 발굴, 지원하며 사회적 리더십을 갖춘 한국의 여성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통하여 국가발전과 인류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 사무소는 수도권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본회 회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
2. 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위한 학술 및 연구 사업
3. 여성디자이너 및 관련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 교육과 리더십 함양을 위한 사업
4. 국내외 디자인 네트워크의 구축 및 확장과 긴밀한 교류를 위한 사업
5. 회원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 회원의 종류 및 자격조건은 각 항과 같다.

- ① 정회원은 여성 디자이너 및 관련종사자로서, 7년 이상의 디자인 실무 경력을 갖추거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 ② 이상의 조건에 미달하는 자는 준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 ③ 정회원은 이사회 임원 1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 임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여야 한다.
- ④ 이상의 조건과 별도로, 이사회 의 승인에 의하여 법인회원 및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권리)

- ①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고며 사업추진 시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정관에서 정한 권리를 갖는다.
- ② 모든 회원은 본회가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을 구독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 ① 정회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단, 정회원으로서 1년 이상 해외 장기체류자는 발생기간 동안의 회비납부의 의무가 면제되며 귀국과 동시에 면제 사유가 해제된다.
- ②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도 지속적인 활동을 원할 경우 정해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입회 및 탈퇴)

- ① 본회의 회원 자격을 가진 여성디자이너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신청서 접수일 이후 2주 이내에 입회가 가능하다.
- ② 회원은 60일 이전에 탈퇴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탈퇴를 예고하고 예고 기간 경과 후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포상 및 계명)

-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 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을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계명할 수 있다.
 1. 연속 3회 이상 회비 납입 의무를 이행 하지 않은 회원
 2. 정관, 제 규약, 제 규정 또는 주무관청의 처분에 위반한 회원
 3. 기타 본회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회원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정수와 종류)

본회는 임원으로 회장 1인, 상임이사 50인 이하를 둘 수 있다. 부회장은 20인 이하, 이사는 100인 이하이고, 감사는 2인 이하로 한다. 임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0인이하)
3. 감사 (2인이하)
4. 상임이사 (50인이하)
5. 이사 (100인이하)

제11조 (임원의 선임)

- ① 설립 당시의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회장과 감사는 전임회장 임기만료 전 60일 이내에 이사회의 과반수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 상정하여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된다.
- ③ 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선임된다.
- ④ 임원중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고 잔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 ① 본회 회장의 임기는 1월말부터 기산하여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1월말부터 기산하여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겸직 금지)

임원은 본회의 타 직을 겸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사회의 심의로 의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집행하며 총회 및 이사회 개최 시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 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수행한다.
-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것으로 정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에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에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 (임원의 권위)

- ① 회장이 권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업무(총회 소집 및 의장 직무 제외)를 대행한다.
- ② 회장과 부회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관 제 11조에 근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사회 중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출한다.

제16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본회의 정관이나 이사회에의 의결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본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직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17조 (고문)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외부고문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에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 4 장 총 회

제18조 (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9조 (정기총회 및 소집일자)

정기총회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 한다.

이때 회장은 회의일정, 목적,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 최소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임시총회 및 소집절차)

임시총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감사가 제14조 4항 4호 규정에 의해 소집을 요구할 때 상기의 2, 3, 4호 규정의 경우에는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장은 총회소집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소집해야 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3. 회장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4.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실적,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협회 해산 결의 등 중요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에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한 사항

제22조 (총회의 의결방법)

- ① 총회의 의결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자동 부결된다.
- ③ 총회에서는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총회에서 긴급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3조 (의결권)

- ① 본회의 정회원 모두 의결권을 갖는다.
- ② 회장 및 회원이 의결권이 없는 경우는 다음의 것으로 정한다.
 1. 본회와 회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안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4조 (이사회)

본회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구로 이사회를 둔다.

제25조 (이사회회의 소집절차)

-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의일정, 목적, 안건을 명기하여 이사회 개최 최소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재적 이사 3인 이상의 동의로 제1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재적 이사 과반수의 동의로 회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감사가 제14조 4항 4호에 의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상기의 3, 4호 규정의 경우에는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장은 이사회 소집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를 소집해야 한다.

제26조 (이사회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상정할 의안 또는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5. 회비에 관한 사항 (금액, 납입방법 등 결정, 변경)
6.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신규 회원의 승인 및 회원 제명 결정
8. 기타 주요사항

제27조 (이사회회의 의결방법)

- ①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의결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이사회 성립 정족수일 수는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 ② 이사회에서는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이상 출석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의결권)

- ① 본회의 이사는 모두 의결권을 갖는다.
- ② 이사가 의결권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본회와 이사 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안으로서 이사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9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재 산 및 회 계

제30조 (운영재원)

본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들의 회비, 기부금 또는 후원금, 기타 사업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31조 (사업연도)

본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32조 (사업계획서 제출)

- ① 회장은 매 사업연도 개시 15일전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추후 총회 개최 시 이에 대한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 본회는 제1항과 같이 총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결산서의 제출)

- ① 회장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 본회는 제1항과 같이 총회의 의결을 얻은 당해 사업연도 수지결산서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4조 (잉여금 처분)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하여야 한다.

제35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 할 수 있다.

제 7 장 보 칙

제36조 (해산 및 해산 신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제21조 5항에 의하여 총회에서 전체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 (청산인)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현 회장이 청산인이 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이를 선임할 수 있다. 또한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산 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 (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본회의 해산에 따르는 잔여재산의 처분은 해산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결정하되, 국가, 지방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할 수 있다.

제39조 (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공고사항 방법)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공고되어야 할 사항은 서신 및 유선 또는 본회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41조 (준용)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사항과 산업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부 칙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